"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"

강 남 구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지방소득세(양도소득분) 부과취소

지방소득세(양도소득분)을 지방세기본법 제58조【부과취소 및 변경】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과취소 하고자 합니다.

1. 납세자 : ***
2. 부과취소사유 : 세목착오납부(양도소득분을 종합소득분으로 납부 2015/6자 610-6)
3. 건수 및 세액

(단위:건,원)

부과취소 건 수	당 초	취소(변경)	차 액
1건	16,760,640	16,760,640	0

붙임 1. 지방소득세(양도소득분) 부과취소결정서 1부
2. 지방소득세(양도소득분) 부과취소내역서 1부
3. 부과취소내역 1부. 끝.

주무관	도현수	지방소득세3팀장	김태영	세무2과장	김광수	기획경제국장	전결 09/22 김용운

협조자

시행 세무2과-32829 ( ) 접수 ( )

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
전화 02-3423-5733 /전송 02-3423-8895 / baram21kr@gangnam.go.kr / 부분공개